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2
----------	-----

발의년월일 : 1998. 1.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제안이유

-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기획경제위원회소관에 “도립옥천전문대학”을 신설. (안 제3조)
-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 (안 제7조)

관련법규

-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
-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위원회설치규칙
- 충청북도직제규칙
- '98 개교 공립전문대학 설립인가 공문 사본

충청북도의회위원회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위원회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 다목중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중 “공업경제국” 다음에 “도립옥천전문대학”을 삽입하며,

다목중 “기획·공보·감사·공업경제 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획·공보·감사·공업경제·전문대학운영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3조 제2항 제4호 나목중 “교육사회 및 보건환경”을 “보건환경, 사회복지”로 하며,

제3조 제2항 제5호 가목중 “농정국, 농촌진흥원에 속하는 사항”을 “농정국, 농촌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제3조 제2항 제6호 가목중 “충청북도개발사업소”를 “개발사업소”로 하며, 나목중 “건설교통개발”을 “건설, 교통, 지역개발”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보임”을 “보임 또는 개선(改選)”으로 한다.

제7조 제3항 “의회의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를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로 한다.

제9조중 “위원의 선임·해임·보임”을 “위원의 선임 및 개선(改選)”으로 하며
동조 제1항중 “상임위원의 선임”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해임 및 보임”을 “개선(改選)”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